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3
----------	-----

제출년월일 : 2015. 9. 30.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 개정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한도를 규정(안 제2조~제4조)

다.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범위 규정(안 제5조)

-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통합 운영 및 투명성 제고

라.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근거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지급방법 규정(안 제8조~제9조)

- 처리절차 : 포상금 신청서에 의한 지급 신청 → 위원회 심사 →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근거 대장 작성, 비치(안 제10조)

사. 부정한 포상금 수령에 대한 환수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2) 「지방세법」 제131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2015. 9. 2. ~ 2015.9.2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회의록 공개 및 위원회 제척 근거를 마련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어 안 제5조, 안 제6조에 반영함.

6)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

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을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66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

다.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체납처분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 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재정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최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9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 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신 청 자			징수(세원 발굴)액				청 구 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 고
소속(주소)	성 명	생년월일	건 수	합 계	본 세	가산금			

신문용지 54g/㎡ m
190mm×2658mm

- ※ 1.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별지 제2호서식]

체 납 액 징 수 대 장 (포 상 금 지 급 대 상)

(단위 : 원)

징수월일	징 수 자		체 납 자			징 수 내 역				징수확인 (팀 장)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청구 (지급)액	지 급 일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년/월	과세번호	세목	징수액					

신문용지 54g/㎡ m

[별지 제3호서식]

숨 은 세 원 발 굴 과 징 대 장 (포 상 금 지 급 대 상)

(단위 : 원)

납 기	부과자(제보자)		세 목	구 분	발굴세원	납세의무자			징수일자	징수확인 (팀장)	포상금지급		
	직 급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포상 금액	지급일	사 유

신문용지 54g/㎡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규정한 사항임.

4. 작성자

- 세무2과 세무7급 문정연(330-1223)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

□ 지방세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27호, 2015.7.24., 일부개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 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절차 및 영치 해제와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